

주요 KS 제·개정 해설

KS K 2620 충전재용 우모 주요 개정 내용

고분자섬유과 공업연구관 주소령 02)509-7238 soyoung@ats.go.kr

- □ 기술표준원은 오리털, 거위털 등 충전재용 우모를 사용하는 다운제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제품 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"충전재용 우모"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의 품질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하였다.
 - 대표적 다운제품인 오리털 점퍼, 이불 등의 소비 가 증가함에 따라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
 -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다운제품의 불만사 례
 - * 522건('00) → 901건('01) → 1115건('02)
- □ 다운제품의 다표적인 충전재인 오리털. 거위털은 고급소재인 다운(솜털)과 저급소재인 깃털로 혼합되어 있고 다운의 실제 함량에 따라 제품의 품질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이들 성분에 대한 정확한 조성 혼합률 표시가 요구된다(붙임 참조)
 - 기존 규격에서는 다운함량 표시에 있어 다운함 량이 최대 10%까지 적게 충전한 것을 허용하였 으나 개정 규격에서는 제품 품질표시에 실제 함 유된 다운 합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

- 기타 깃털 및 오라기의 함량 등도 최대 허용값 을 규정함
- 수출 또는 외국제품의 경우 다운함량을 실제함 량으로 표시하고 있어, 동일 다운함량을 갖는 것 으로 표시된 국내 유통제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음
 - (예) 다운함량이 70%로 표시된 제품의 실제 다 운함량 :
 - 수출제품 및 외국제품 : 70%이상
 - · 국내 유통 제품 : 대부분 60%
- 육조깃털, 손상깃털, 협잡물이나 오라기 등은 많이 함유될수록 제품의 질이 저하되므로 육조 깃털, 손상깃털, 협잡물은 5%이내, 오라기는 다운함량의 15% 이내로 규정함
- □ 다운함량이 국제수준(75%이상)인 제품의 경우에 만 "다운제품"으로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.
- ㅇ 기존 규격의 경우 50%이상의 다운 함유시 다운

- 제품으로 규정하였으나 1999년 IDFB(The International Down and Feather Bureau) 협약에 의해 국제 통상에 있어서는 75% 이상의다운 함유시 다운제품으로 표시하고 있음
- 소비자 입장에서는 『다운의 조성혼합률(예: 다 운/깃털 70/30)』보다 『다운제품』이라는 표 시가 인지하기 쉬우므로 『다운제품』의 다운 함량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운함량 75% 이상인 제품의 경우에만『다운제품』으 로 표시토록 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 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함

* 우모의 개요

우모(羽毛, Down & Feather)란 수조류(水鳥類)의 깃털을 의미함

- 우모의 형태는 한가닥의 실모양이 아닌 복잡한 형태이므로 온·습도 변화에 따라 수축, 팽창, 흡습, 방습, 배수작용을 행하므로 『살아 있는 섬유』로 지칭됨
 - 조류의 종류에 따라 수조류인 오리털, 거위털 또 는 육조류인 닭털 등으로 구분되며 형태에 따라 다운(솜털), 훼더(깃털), 육조깃털, 손상 깃털, 협 잡물 및 오라기로 구분됨
 - 소재의 가격이 kg당 2,000원~80,000원대에 이르는 등 품질수준과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며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이 용이하지 않음
 - * 오리털 점퍼 제작을 위해 10여 마리(220~ 250g) 오리 소요
 - * 우모이불 제작을 위해 90마리(1.5kg) 오리 소요

*

다운(솜털)		깃털	
실물사진	50배 확대사진	실물사진	50배 확대사진